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 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제1조~제4조)
-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제6조)
-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제7조~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임명) ①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및 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사람
3.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경력에 있는 사람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어선원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범위와 관계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6개월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제3조(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관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어선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배치) ① 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어업관리단(지역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무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의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41조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정
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직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직무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
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증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389